

의안번호	제 27 호
의결년월일	1998. . .

의결사항

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8. 8. 27.

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7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'98. 8. 27.
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·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본청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의 유사·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
- 나. 기존의 과 명칭을 기능에 부합되고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되게 변경하고 농촌지도소의 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대하여 조정하기 위함.

2. 법적근거

-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[도 행정 12200-10406('98. 6. 22)]

3. 주요골자

- 가. 농촌지도소 과 통·폐합
 - 기술개발과 + 기술보급과 = 기술지원과
- 나. 본청 농정과 이관
- 다. 명칭 변경
 - 사회지도과 ⇒ 농업진흥과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사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

제1조(설치)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, 농업
시책개발 및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에 농촌지도소(이하 “지도소”라 한
다)를 둔다.

제2조(업무)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농어촌발전심의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영
2.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
3. 농업진흥지역 관리
4. 농지전용 허가·협의·승인에 관한 사항
5. 농산물 유통 지도·감독
6. 정부양곡 보관, 가공, 조작, 수송관리 및 감독
7.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
8. 농업기계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9. 토양개량제 공급 및 종합 농토개량사업
10. 농촌지도자 육성 지원
11. 4-H조직 육성
12.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기획·평가
13. 지역농업 개발센터 관리
14. 농업기술개발 및 환경보전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
15. 농촌 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
16. 협동영농에 관한 지도

17. 농업기술지원단 운영
18. 농산물 수출 추진 및 육성 지도
19. 식량 증산계획 수립 및 시행
20.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
21. 시설원예, 과수, 화훼, 특작 생산육성 및 지원사업
22. 축산물 유통검사 및 지도 단속
23.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및 소 전산화 사업
24. 꽃 양묘장 운영

제3조(소장) ①지도소 및 농민상담소에 각각 소장을 둔다.

②소장은 시장의, 농민상담소장은 지도소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하부조직)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농정과, 농업진흥과, 기술지원과를 둔다.

제5조(공무원) 지도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과 정원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